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4. 17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원자력사업관리실

[상담 내용]

금품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업체에서 선물을 택배로 발송을 하거나 책상에 두고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으로 판단됩니다. 향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,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고방법 : 사전 서면 신고(사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별지5호 신고서식 활용)
단,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 거래 등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내에 신고(소명)

[확 인] 2023. 4. 17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4. 26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인사처

[상담 내용]

일과 관계없이 알고지내는 지인인 공무원에게 승진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은가요?

[상담 결과]

- 지인인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,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,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-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사교, 의례 등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[확 인] 2023. 4. 26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5. 3

[상담유형]

방문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정보보안실

[상담 내용]

우리회사에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한 감사,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물, 음료 등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

[상담 결과]

-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고,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(예 : 감사, 감독, 평가 등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, 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감사업무를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,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(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)

[확 인] 2023. 5. 3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5. 29

[상담유형]

전화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신사업연구소

[상담 내용]

사례금을 받지 않는 강연의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나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10조 "사례금을 받는"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 (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참고)

[확 인] 2023. 5. 29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6. 12

[상담유형]

방문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지속성장처

[상담 내용]

중앙행정기관에서 외부강의등 참석 요청을 받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?

[상담 결과]

-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에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'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'의 범위는
 - 1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① 헌법기관 :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
 - ② 중앙행정기관 :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,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

[확 인] 2023. 6. 12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

상담기록관리부

[상담일시] 2023. 6. 22

[상담유형]

기타

[상담요청자] 성명 : 000

직급 : 책임급

소속 : 지속성장처

[상담 내용]

퇴직자와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어 커피를 마신 경우에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해야할까요?

[상담 결과]
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(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) 제 1항에 의거,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우리 회사 퇴직자(2년 미만) 와 사적 접촉(골프, 여행, 사행성 오락 등) 을 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해당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미만이면서 직무관련자인지, 법에서 명시하는 사적 접촉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, 해당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[확 인] 2023. 6. 22

윤리준법팀장 구선모